

폐기물 관리 규정 및 지침서

2025년 01월 01일 최초 제정

1. 목적

본 규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분리, 보관, 운반, 재활용 및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 폐기물이란 사업활동 또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질을 말하며,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포함한다.
-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 ▶ 사업장폐기물이란 생산, 연구, 시험, 설비운전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지정폐기물이란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환경오염 또는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 ▶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원료 또는 자원으로 다시 이용하거나 에너지 회수에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 ▶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최종처분을 포함한 모든 관리행위를 말한다.

4. 폐기물 관리 기본원칙

1. 폐기물은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생산공정 및 작업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한 한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4. 폐기물은 주변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
- 폐기물 관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5.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

5.1 폐기물의 내부분류

구분	분류	예시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	휴지, 음식물
재활용품	종이류	박스, 복사지
	플라스틱	PET, PP
	비닐	포장비닐
	고철	철스크랩
	알루미늄	캔
	목재	파렛트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불량제품
	폐필터	집진기 필터
지정폐기물	폐유	윤활유
	폐유기용제	IPA
	폐산	염산
	폐알칼리	가성소다
	폐흡착포	오일흡착포
	폐도료	페인트

5.2 항목별 분리배출

모든 폐기물은 발생 즉시 다음 기준에 따라 분리 배출한다.

항목	배출기준
종이	테이프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	내용물 제거 후 배출
비닐	오염물 제거 후 배출
금속	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구분
목재	일반목재와 방부목 구분
폐유	전용 드럼 사용

폐용제	밀폐용기 사용
폐흡착포	지정폐기물 용기 사용

5.3 폐기물 보관

- ①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보관한다.
- ② 폐기물 보관장은 다음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가림 시설 설치
 - 방수 바닥
 - 누출방지시설
 - 소화기 비치
 - 위험표지 부착
 - 잠금장치 설치

6.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폐기물 발생 → 내부 분류 → 분리배출 → 임시보관 → 환경안전팀 확인 → 인계 → 재활용 또는 적정처리 → 기록보관

7. 교육 및 점검

환경안전팀은 연 1회 이상 폐기물 관리교육을 실시하며, 월 1회 이상 폐기물 보관장과 분리배출 상태를 점검한다.

8. 기록관리

- 다음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처리 실적, 폐기물 인계 확인서, 점검일지, 교육기록,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8. 부칙

본 절차서는 2025년 01월 01부터 시행한다.